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6866

발의연월일: 2024. 12. 24.

발 의 자:민홍철·백혜련·문진석

복기왕 • 한정애 • 정준호

허성무 · 한준호 · 신정훈

황 희·차지호·박홍근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시청역 역주행 사고 등 도로를 주행하던 차량이 보도를 침범 하여 보행자를 사망하게 하는 사고가 빈발하고 있음.

한편 차량의 보도침범으로 인한 사고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차량의 진입을 차단하거나 감속시키기 위한 도로안전시설의 설치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와 같은 도로안전시설의 설치를 강제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큰 도로 구간에 대하여 방호울타리 등 도로안전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차량의 보도침범으로 인한 보 행자 안전사고 및 사고피해 저감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2 신 설).

법률 제 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2(보도 진입 방지시설의 설치) ① 도로관리청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도로 구간에 방호울타리 등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로안전시설의 설치 및 성능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54조의2(보도 진입 방지시설의
	설치) ① 도로관리청은 보행자
	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사고 발
	생 우려가 있는 도로 구간에
	<u>방호울타리 등 도로안전시설을</u>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로안전시설
	의 설치 및 성능 기준 등에 필
	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u> 정한다.</u>